

#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572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10. 5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개정이유

- 행정 규제개혁추진과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

## 2. 주요골자

- 기 납부한 수수료라도 신청사항의 변경 또는 취소시 수수료반환. 다만 소인된 증지는 불반환

## 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
  -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

## 4. 입법예고 : 고성군 공고 제99-107호('99. 6.23. ~ 7.12)

## 5. 본문 : 불임참조

##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(기납수수료의 반환)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6조(기납수수료의 불반환) 이</u>  <u>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</u>  <u>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</u>  <u>환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<u>제6조(기납수수료의 반환) 이미</u>  <u>납부한 수수료라도 신청사항을</u>  <u>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하여</u>  <u>야 한다. 다만 소인된 증지는</u>  <u>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